

1. 개정이유

「방위사업법」 개정으로 방산계약 특례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본 규칙에 해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의2)

- 1) 규칙 적용대상에 ‘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’ 추가
- 2) 방위사업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원가계산 기준에 ‘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’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리부속품”을 “수리부속품,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 관련
장비 또는 정비 용역

제4조의2의 제목 “(필수수리부속품에 대한 특례)”를 “(필수수리부속품,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에 대한 특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필수수리부속품”을 “필수수리부속품,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”으로, “다목”을 “라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방위사업법」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<u>수리부속품</u> 을 조달하거나 「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」 제8조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의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 <u>수리부속품,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방산원가대상물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. 가.·나. (생략) <신설> 다. (생략) 2. ~ 20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.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<u>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</u> 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 2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<u>필수수리부속품에 대한 특례</u>) <u>필수수리부속품</u> 중 제2조	제4조의2(<u>필수수리부속품,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</u>)

제1호가목 및 <u>다목</u> 에 해당하지 않는 물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가 방산업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원가 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	<u>에 대한 특례) 필수수리부속품,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--- 라목-----</u> ----- ----- -----
--	--